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380 호 2023. 1. 5.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-320호[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]..... 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-3호[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]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-4호[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].....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-6호[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]..... 4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-6호[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내역 공고]..... 5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-9호[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..... 6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-12호[공 시 송 달 공 고]..... 15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-17호[도시계획시설(주차장 276호)사업]..... 16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-22호[행정대집행 계고서]..... 17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-28호[2023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]..... 18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-29호[2023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]..... 19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-30호[2023년도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 공표]..... 21

안 내	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공고 → 북구공보
--------	--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미디어정보담당관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- 320호

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

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3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: “붙임 별책”

가. 차량, 기계장비, 선박, 항공기, 시설, 부수시설물, 임목, 어업권, 광업권, 회원권
(골프회원권·콘도미니엄회원권·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·승마회원권·요트회원권), 지하자원

나. 어업권 기준가격(복구)

(단위:천원)

어업의 종류		양식방법	양식물의 종류	단위	기준가격
종별	유형별				
복합	수하식	연승식	-	1ha	14,560
정치망	-	-	-	1ha	7,630
해조류	수하식	연승식	-	1ha	8,120

※ 붙임별책 : “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조사, 산정 업무요령”은 복구 부과담당관
(☎ 052-241-7541)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.

부 칙

① 【시행일】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- 3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월 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점용·사용허가 연월일 : 2023. 1. 3.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가설건축물 축조(현장사무실, 시험실)
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292-1번지 일원
4. 점용·사용의 면적 및 기간
 - 가. 면 적 : 39㎡ (일시)
 - 나. 기 간 : 2023. 1. 5. ~ 2023. 12. 31. (일시)
5. 점용·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성 명 : 중산건설(주)
 - 나. 주 소 :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07 (2층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- 4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월 5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소재지 지번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호계9길 14-1	호계동 716-9	2023. 1. 5.	건축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(☎052-241-7283)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 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i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3. 1. 5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- 6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월 4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점용·사용허가 연월일 : 2023. 1. 4.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단독주택 진출입로 이용(인공구조물 설치 없음)
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동 936-1번지 일원
4. 점용·사용의 면적 및 기간
 - 가. 면 적 : 58m² (영구)
 - 나. 기 간 : 2023. 1. 5. ~ 2028. 12. 31. (영구)
5. 점용·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성 명 : 최진욱
 - 나. 주 소 : 울산광역시 복구 달천로 50, 105동 402호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- 6호

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내역 공고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4항 및 「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」 제2조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2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요청기관	제공일자	법적근거	제공목적	개인정보 항목
울산 복구 징수담당관 (울산지방법원)	'22. 12. 5.	-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 - 「민사소송법」 제294조	2022하단311 파산선고	조회대상자 성명, 등록번호, 주소 및 토지소유현황
울산광역시 사회혁신담당관	'22. 12. 6.	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0조	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자격변동여부	
울산 복구 징수담당관 (울산지방법원)	'22. 12. 7.	-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 - 「민사소송법」 제294조	2022개 회65174 개인회생	
울산 복구 징수담당관 (울산지방법원)	'22. 12. 19.	-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 - 「민사소송법」 제294조	2022개 회63277 개인회생	
울산 복구 징수담당관 (울산지방법원)	'22. 12. 19.	-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 - 「민사소송법」 제294조	2022개 회66085 개인회생	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- 9호

울산광역시 복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울산광역시 복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5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기존 상위법령인 「주택법」에서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이 분리·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변경된 법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근거 법규명 변경(안 제1조)

- 「주택법」을 「공동주택관리법」으로 변경

나. 적용 범위 확대(안 제2조)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및 「건축법」에 따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' 추가

다.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기재요령 추가(안 별지 제1호서식)

- 층간소음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를 위해 신청서에 층간소음 상대세대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'기재요령' 명기

3. 관계법령

- 가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1조 및 제8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
- 나. 「주택법」 제49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
- 다. 「건축법」 제11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건축주택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제출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
- 전화번호 : 052-241-8026, 팩스번호 : 052-241-8019

6. 기타사항

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주택법」 제52조”를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1조 및 제80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안에서 「주택법」 제49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주택법 시행령」 제67조”를 “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87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를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1조 및 제80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.</p>	<p>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안에서 「주택법」 제49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
<p>제3조(구성) ①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은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67조에 따른다.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.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87조-----.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</p>

③ (생략)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- 1. 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
- 2. 울산광역시 복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기능) ----- 다음 -----

-----.

- 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1조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
- 2. 구청장-----

신·구조문(별지)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지 제1호서식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h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</th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15%;">신청인 (대표자)</td> <td style="width:15%;">성명</td> <td style="width:15%;">생년월일</td> <td colspan="2" style="width:55%;">주소 (연락처)</td> </tr> <tr> <td>피신청인 (대표자)</td> <td>성명</td> <td>생년월일</td> <td colspan="2">주소 (연락처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분쟁조정 공동주택 현황</td> <td>공동주택명</td> <td colspan="3"></td> </tr> <tr> <td>세대수</td> <td>층·동수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>사업승인일자</td> <td>준공일자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>조정신청 내용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>신청취지 및 사유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>분쟁발생사유및 분쟁당사자간 교섭경과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padding: 10px;"> <p>「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인)</p> <p>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</p>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padding: 5px;"> <p>첨부서류 :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</p> </td> </tr> </table> <p><신 설></p>	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					신청인 (대표자)	성명	생년월일	주소 (연락처)		피신청인 (대표자)	성명	생년월일	주소 (연락처)		분쟁조정 공동주택 현황	공동주택명				세대수	층·동수			사업승인일자	준공일자			조정신청 내용					신청취지 및 사유					분쟁발생사유및 분쟁당사자간 교섭경과					<p>「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인)</p> <p>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</p>					<p>첨부서류 :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</p>					<p>[별지 제1호서식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h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</th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15%;">신청인 (대표자)</td> <td style="width:15%;">성명</td> <td style="width:15%;">생년월일</td> <td colspan="2" style="width:55%;">주소 (연락처)</td> </tr> <tr> <td>피신청인 (대표자)</td> <td>성명</td> <td>생년월일</td> <td colspan="2">주소 (연락처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분쟁조정 공동주택 현황</td> <td>공동주택명</td> <td colspan="3"></td> </tr> <tr> <td>세대수</td> <td>층·동수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>사업승인일자</td> <td>준공일자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>조정신청 내용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>신청취지 및 사유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>분쟁발생사유및 분쟁당사자간 교섭경과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padding: 10px;"> <p>「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인)</p> <p>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</p>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padding: 5px;"> <p>첨부서류 :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</p> 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color: red; font-weight: bold;">* 중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 "피신청인"란 선택적 기입 가능</p>	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					신청인 (대표자)	성명	생년월일	주소 (연락처)		피신청인 (대표자)	성명	생년월일	주소 (연락처)		분쟁조정 공동주택 현황	공동주택명				세대수	층·동수			사업승인일자	준공일자			조정신청 내용					신청취지 및 사유					분쟁발생사유및 분쟁당사자간 교섭경과					<p>「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인)</p> <p>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</p>					<p>첨부서류 :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</p>				
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인 (대표자)	성명	생년월일	주소 (연락처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피신청인 (대표자)	성명	생년월일	주소 (연락처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쟁조정 공동주택 현황	공동주택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세대수	층·동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업승인일자	준공일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조정신청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취지 및 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쟁발생사유및 분쟁당사자간 교섭경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「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인)</p> <p>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첨부서류 :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인 (대표자)	성명	생년월일	주소 (연락처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피신청인 (대표자)	성명	생년월일	주소 (연락처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쟁조정 공동주택 현황	공동주택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세대수	층·동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업승인일자	준공일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조정신청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취지 및 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쟁발생사유및 분쟁당사자간 교섭경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「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인)</p> <p>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첨부서류 :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[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]

의 건 제 출 서

의견 제출자	성명/ 단체명	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	전화번호	
	주 소			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찬·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-12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하천구역(동천) 내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,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공고내용: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3. 1. 4. ~ 2023. 1. 18. (14일간)
3. 공고장소: 시군구보, 홈페이지, 게시판
4. 무단점유 현황

재산의 표시		무단점유현황				비 고
소 재 지	번지	행위자	주소	점유내용	점유면적 (㎡)	
울산광역시 복구 중산동	1178-54번지	미상	미상	불법점용	296	

5. 공시송달내용

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, 2023. 1. 18.(수)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, 기한 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- 17호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 276호)사업 공사완료 공고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-265호(2018. 10. 18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, 고시 제2020-235호(2020. 12. 17.), 제2022-303호(2022. 12. 22.)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(변경)인가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276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5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276호)사업

나. 명 칭: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

2. 위 치: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77-2번지 일원

3. 사업규모: 주차장 조성 8,645㎡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나. 주 소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)

5. 사업기간: 2018. 11. 8.~2022. 12. 31.

6.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,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 (☎052-241-798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

울산광역시 북구 제2023 - 22호

행정대집행 계고서

성명 : 미상

주소 : 미상

우리 구에 위치한 공유수면 내 귀하께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를 위반하여 공유수면을 무단점용 및 금지행위를 하고 있는바,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귀하 소유의 불법시설물을 **2023년 1월 18일까지 자진철거**될 수 있도록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(대집행의 절차)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(대집행과 그 비용징수)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(비용납부명령서) 및 제6조(비용징수)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공고 기간	대집행 방법
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944번지 일원	무단점용	2023. 1. 4. ~ 2023. 1. 18. (14일간)	공고기간 완료 후 울산 북구청 자체 철거

2023년 1월 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- 28호

2023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

「주민투표법」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3년 1월 5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(단위 : 명)

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			주민투표청구 서명인 수 (총수의 1/20)
계	내국인	외국인	
176,107	175,805	302	8,806

- ※ 내 국 인 : 2022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복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(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)
- ※ 외 국 인 : 2022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복구에 등록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18세 이상의 외국인
- ※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- 29호

2023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표

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역선거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3년 1월 5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구청장

(단위 : 명)

구 분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	최소 서명인 수	비 고
북 구	173,910	26,807		
구 청 장	농소1동	28,666	1,740	
	농소2동	32,243	1,740	
	농소3동	29,156	1,740	
	강동동	12,450	1,740	
	효문동	25,003	1,740	
	송정동	29,251	1,740	
	양정동	8,298	1,245	
	염포동	8,843	1,327	

○ 구의원

(단위 : 명)

구 분	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	최소 서명인수	비 고	
구 의 원	가선거구	57,917	11,584			
	동 별	농소1동	28,666		580	
		송정동	29,251		580	
	나선거구	61,399	12,280			
	동 별	농소2동	32,243		614	
		농소3동	29,156		614	
	다선거구	54,594	10,919			
	동 별	강동동	12,450		546	
		효문동	25,003		546	
		양정동	8,298		546	
		염포동	8,843		546	

※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하며,

1.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우리 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)
2.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산정

※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

1. 구청장 : 청구권자 총수의 15/100이상
2. 구의원 :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- 30호

2023년도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 공표

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 및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5조의 규정에 따라 *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*주민조례청구 :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

(단위 : 명)

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			주민조례청구 서명인 수 (청구권자 총수의 1/70이상)	비 고
계	내국인	외국인		
176,039	175,805	234	2,515	

※ 내 국 인 : 2022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복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

※ 외 국 인 : 2022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복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중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

※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6

2023년 1월 5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